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2
----------	----

제안년월일 : 2007. 8. 29.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2007년 7월 19일자 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거 새로 신설된 교육지원담당관의 업무 및 직무에 대한 우리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교육혁신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위원회로 지정함.
(안 제3조 제2항 제2호 바목 신설)

나. 부칙에 제3조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9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교육지원담당관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9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가. (생략)</p> <p>나. (생략)</p> <p>다. (생략)</p> <p>2.(생략)</p> <p>가. (생략)</p> <p>나. (생략)</p> <p>다. (생략)</p> <p>라. (생략)</p> <p>마. (생략)</p> <p><신설></p> <p>3. (생략)</p> <p>가. (생략)</p> <p>나. (생략)</p> <p>다. (생략)</p>	<p>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현행과 같음)</p> <p>마. (현행과 같음)</p> <p>바. <u>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3.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